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0
----------	-----

2018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8월 29일, 김생환의원 외 12명
-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 생 환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만족도 조사결과에 근거한 방문객 분포는 서울시민이 42%인 반면, 경기도민 46%, 기타 12%로 서울시민 이외에도 경기도민의 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의 근거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가족지원카드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둥이행복카드로 한정하고 있어, 공원이 위치한 과천시와 경기도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다둥이가족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로 한정된 복지카드를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로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요금의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로 한정된 혜택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카드”로 변경하여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을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복지카드 소지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이 서울시민보다 경기도민이 더 많을 정도로 경기도민의 방문이 많은 공원임¹⁾. (서울시민 42%, 경기도민 46%, 기타 12%)
-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가족지원카드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서울시로 한정하고 있어, 공원이 위치한 과천시와 경기도의 다자녀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1) 법령이 정하는 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공원의 입장료(제40조)와 점용료(제4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요금과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8조에는 입장료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이, 제20조에는 대상별 30~50%의 감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1) 2012년 서울대공원 방문객 만족도 조사 결과

- 서울시 공원 중 입장료를 징수하는 공원은 서울대공원이 유일하며, [별표1]에 동물원 입장과 테마가든 입장료를 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발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30명 이상의 단체에게 입장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음.

※ 현행 동물원 입장료: 어른 5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테마가든 입장료: 어른 2천원, 청소년 1천5백원, 어린이 1천원

2) 조례의 적용 대상

-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 12조), 동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 조례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 관할을 침해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입안할 것을 권고하는 법제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법규 의견 12-0035 참고)
- 서울대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과천시와 경기도민에 한하여 입장료 감면에 대한 적용이 되도록 한 것은 서울대공원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 거주 주민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의 본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시정방향과도 부합되므로 시정 홍보에는

기여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칙의 시행일이 공포 후 적용이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가 통과한 후 적용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조례 통과 후 적용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므로 부칙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0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로 정해졌으나, 통과 후 적용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골자

- 부칙에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생 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u></p> <p>3. ~ 4.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u></p> <p>3.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